

현금영수증 발급의무 확대에 따른 incontral 금지

안녕하십니까? 귀하(사)의 사업이 날로 번창하시기 바랍니다.

가전제품소매업, 의약품 및 의료용품소매업, 기술 및 직업훈련학원, 컴퓨터 학원, 기타 교육기관, 체력단련시설 운영업, 묘지분양 및 관리업, 장의차량 운영업은 2020.1.1.부터 현금영수증 발급의무가 시행됩니다.

위 업종을 영위하는 귀하(사)는 2020.11.부터 건당 거래금액(부가가치세 포함)이 10만원 이상인 계좌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금을 현금으로 받은 경우 상대방이 현금영수증 발급을 요청하지 않더라도 반드시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여야 합니다.

만약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않으면 발급하지 않은 금액의 20%가 기산세로 부과되오니 반드시 현금영수증 발급의무를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은 해당 여부는 실제 사업의 내용으로 판단하므로 사업자등록 상 의무발행업종이 아니더라도 실제 사업이 아래 업종에 해당 되면 현금영수증 발급의무가 있음을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<'20.1.부터 추가되는 의무발행 업종>

업 종	국세청 업종코드
가전제품 소매업	가전제품소매업(523321,523330,523390)
의약품 및 의료용품 소매업	의약품 및 의료용품 소매업(523111,523114,523116)
기술 및 직업훈련학원	기술 및 직업훈련학원 (809022,809002)
컴퓨터학원	컴퓨터학원(809013)
기타 교육기관	기타 교육기관(809010)
체력단련시설 운영업	체력단련시설 운영업(924305)
묘지분양 및 관리업	묘지분양 및 관리업(930302, 701700)
장의 차량 운영업	장의 차량 운영업(602306)

기타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국세상담센터(☏126번-①-①) 또는 관할 세무서 담당자에게 연락 주시면 친절히 안내하여 드리겠습니다.

현금영수증가맹점 가입

• (가입방법) ①~③ 중 선택

① 신용카드단말기 설치업체에 의뢰하여 현금영수증 발급이 가능한 단말기를 설치하고 가입을 신청함으로써 가입할 수 있습니다.

② 아래 현금영수증사업자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회원가입

상 호	홈페이지	연락처
(주)엘지유플러스	taxadmin.uplus.co.kr	1544-7772
한국정보통신(주)	www.kicc.co.kr	1600-1234
파스트데이타코리아(유)	www.moneyon.com	1544-7300
(사)금융결제원	www.kftcvan.or.kr	1577-5500

③ 국세상담센터 ☎ 126 (현금영수증) ARS를 이용하여 가입

☎126→①(홈택스상담)→①번(현금영수증)→②번(상담센터 연결)→①번(한국아이디→④번(가맹점 현금영수증 발급서비스)→사업자번호(10자리)→비밀번호 설정→대표자 주민번호(13자리)→비밀번호(4자리))→①번(가맹점 가입)

• (미가입 시 불이익) 미가입기간의 수입금액 × 1% 기산세 부과

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의 발급 의무

• (발급방법) 신용카드 단말기, 현금영수증사업자 홈페이지, ARS(국세청상담센터 ☎ 126), 국세청 홈택스(현금영수증 발급) 중 선택

• (발급의무 기준금액) 거래 상대방의 발급요구가 없어도 거래 건당 10만원 이상인 계좌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금을 현금으로 받으면 현금 영수증을 반드시 발급해야 함
* 거래 상대방 인적사항을 모르는 경우에는 국세청 지정번호(010-000-1234)로 발급

• (미발급 시 불이익) 미발급금액 × 20% 기산세 부과

※ 거래금액이 10만원 미만인 계좌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금을 현금으로 받은 경우에도 거래 상대방이 발급을 요구할 때는 반드시 발급해야 함

현금영수증가맹점 스티커 부착

• (부착의무) 현금영수증 의무발행가맹점 스티커를 '계산대나 계산대 근처, 사업장 출입문 입구' 등 소비자가 잘 볼 수 있는 곳에 부착해야 함

• (미부착 시 불이익) 50만원의 과태료 부과

* 스티커는 관할 세무서에서 받으실 수 있습니다.